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위승계 신고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승계를 하는 사람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내용	인증번호	
	인증의 구분	가축의 종류
		자유방목 기준 총족 여부
	농장소재지	여/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번호
	사육시설 동 m²	사육규모

승계사유 [] 양수 [] 상속 [] 기타()

「동물보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구비서류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1부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1부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동의]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동물보호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홍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사 항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법인(조직)이 신고인인 경우에는 가족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